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04
----------	------

2017년 11월 21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년 9월 27일, 김태수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7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7년 11월 21일 상정, 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태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 명칭을 소방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,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 “국민안전처장관”을 “소방청장”으로 변경함(안 제49조제2항)
- (2) “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”을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”으로 변경함(안 제60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정부조직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사항과 상위 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-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 조직이 기존 17부 5처 16청/2원 5실 6위원회에서 18부 5처 17청/2원 4실 6위원회로 개편된 바 있음.
- 이에 따라 안 제49조제2항은 시·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주체를 현행 ‘국민안전처장관’에서 조직개편 된 ‘소방청장’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이나,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4조제1항1)에 따른 작성 주체는 소방청장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이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.

[표]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	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	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시·도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	② ----- - <u>소방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② ----- - <u>행정안전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1) 제24조(시·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·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(이하 "시·도안전관리계획"이라 한다)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소위원회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8. 수정안의 요지 :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‘시·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’의 작성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“소방청장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수정 필요.

9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10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17년 11월 21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‘시·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’의 작성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개정안의 “소방청장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수정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“소방청장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수정함(안 제49조제2호).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9조제2항 중 “소방청장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2항 중 “국민안전처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0조제1항 중 “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”
을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<u>국민안전처장관</u>의 시·도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60조(대책본부 문서관리) 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「<u>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</u>」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행정안전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0조(대책본부 문서관리) ① ----- ----- 「<u>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</u>」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